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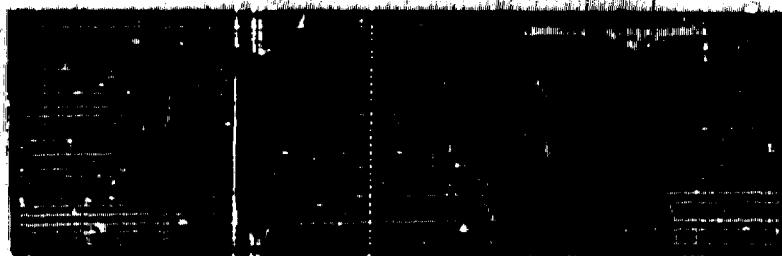
제 267 호

한국일보 기사 출판사업 당국서
판권 침해로 신고 접수 첫 흐름

1973. 8. 10.

총 73 - 7834

인천광역시 출판문화재



차
례

◎ 소 카

제 717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경기 도서관

개정교육 3

제 718 호 서울특별시립 세마을사회복지관

성자교육 3

◎ 사 카 4

1. 서울광주 출판 판교서 출판하 위하.
2. 서울광주 출판서로서의 유통을 막는다.

서울특별시

1096

조례

문화부상사의 수임을 일으킨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에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 8.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장 사무관

◎ 서울특별시조례 제 717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717 호.)

제 1 조

제

임명

총보통서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을 1972년 5월 10일 임명하는 조례는 다음과 같다.
임명도서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을 30명으로 한다.
총보통서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을 10명으로 한다.

109-4

109-4

국무총리의 수임을 일으킨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에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2. 8. 7. 9.

서울특별시장 장관

◎ 서울특별시조례 제 718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조(부칙) 항제임에 대한 사무부지자임을 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이하 「부칙」이라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4호(1972년 5월 10일)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4호(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5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109-5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5호(1972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109-5호)

제 1 조

제

임명

총보통서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을 1972년 5월 10일 임명하는 조례는 다음과 같다.
임명도서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을 30명으로 한다.
총보통서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장을 10명으로 한다.

109-4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5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6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7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8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9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10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11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12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13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14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15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16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1972년 5월 10일)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 109-17호(1972년 5월 10일)로 개정된다.

제4조(공무원) ①부서간에 청탁과 필요한 공무원을 출마.
 ②부서 공무원의 성적은 다른 청탁을 하여 미한다.
 ③관상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리를 잘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지하도록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에 시행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에는 구조합 부묘부대 시행함에

사 릹

◎ 1972. 8. 8.

구립정비지구과 지방도부기금 전 영업
 위에 의하여 그 내용은 다음과
 영농조합·지방자치기사로 이 영업
 72.8.9부터 72.10.20 까지 청탁
 과 관리를 대상

◎ 1972. 8. 9.

영농조합·지방행정서기 경영 식
 마포구 관리를 대상
 역청사업소 지방행정주사 현지점
 용산구 관리를 대상
 중기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전용성
 성동구 관리를 대상

마포구 지방행정주사 청탁과
 중기관리사업소 관리를 대상
 한강전설 사업소 지방행정주사로 김의하
 모시가스사업소 관리를 대상
 서초전설 사업소 지방행정주사로 유길상
 영등포구 관리를 대상
 노루파 지방행정주사로 이종희,
 반재파 관리를 대상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로 노기우
 역청사업소 관리를 대상
 광부전설 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유관성
 모시가스사업소 관리를 대상
 역청사업소 지방행정서기 박승준
 부악공원관리사무소 관리를 대상
 운동장 지방행정서기 박경환
 서부전설사업소 관리를 대상
 영농조합·지방행정서기로 강경우
 서부전설사업소 관리를 대상

영농조합·지방행정서기로 하길 원
 역청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강중관
 강계장 관리를 대상